

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를 하였으나,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대상자		주 소	발급기한	지참물	비고
	성명	생년월일				
1	이*우	2000.05.06	완정로334번길 47	2018.05.31.	학생증 증명사진1매	
2	방*진	2000.05.23	완정로334번길 47	2018.05.31.	학생증 증명사진1매	

발급기한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의3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(☎ 032-560-3356)

2017년 5월 16일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장

